

2021년 감사원 대행감사 결과 보고

2021년도 감사원 대행감사 실시 계획에 따라 4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한 대행감사 결과보고임. 【기획감사실-14084(2021.10.8.)호】

I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1. 8. 23. ~ 9. 17.(20일간)

※ 코로나19 관련 지원근무 등으로 감사기간 당초 10일에서 20일로 변경 시행함.

■ 감사반 : 청렴감사팀장 외 4명

■ 감사분야 : 계약, 세무, 회계, 모범사례 발굴 등

< 2021년 대행감사 중점사항 >

분야	감사중점	감사반 분장
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행정6급 임주영
세무	이의재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징수 부적정	행정6급 임주영
세무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행정7급 김해영
회계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	행정6급 임주영
회계	개발부담금 부과 부적정	시설7급 강시영
모범	적극행정으로 예산절감 및 국민편의 증진 등 모범사항	사회7급 김희연

■ 대상부서 : 재무과, 세무1과, 토지정보과, 기획감사실, 자원순환과 등
(모범사례 발굴: 전부서)

■ 감사범위 : 2014. 7. 15. ~ 2021. 7. 31.(분야별 별도 지정)

II 총평

■ 2021년 감사원 대행감사는 2021. 8. 23.부터 9. 17.까지 20일간, 감사원에서 선정·통보한 계약, 세무, 회계, 모범사례 발굴 등 총 4개 분야

6개 중점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음.

- 대체적으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소극행정 예방, 계약질서 확립, 지방재정 확충, 모범사례 발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으며, 변상판정·중징계 대상 및 국민권익에 직접 관련이 있는 중대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음.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①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② 이의재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징수 부적정 사항이 있었으며, 모범사례로는 ‘재활용품 수거 불안정 대비 임시 적환장 확보 및 테이크아웃컵 회수 체계 구축’ 으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개선 사항을 발굴하였음.
-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물품 내역을 점검한 결과, ○○○○과에서는 1억 원 이상의 ○○○○○ 구입과 관련하여 시기별 분할하여 구매하는 등 2단계경쟁을 미실시한 사실이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 구매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하였음.
- 이의재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징수 여부를 확인코자 관내 재개발 민간사업자(○○○구역, ○○○구역, ○○○구역 ○○○○○정비사업조합, ○○개발주식회사, ○○주택건설)에 최근 5년간 부동산 보상취득 증액분 및 취득세 납부자료를 요청하여 점검한 결과, 부동산 보상증액분에 대한 취득세 수정신고를 누락하여 자료작성일 기준(2021.7.31.) 가산세 포함 총 00,000천원의 누락세원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음. 이에 ○○○과에서는 대항감사 기간 중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 보상취득 증액분 신고 독려를 통해 2021. 9. 29.일자 가산세 포함 누락세원 전액(00,000천원)을 추징하여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완료 하였음.

Ⅲ 감사결과

■ 지적건수 : 2건

○ 분야별 감사결과

감사사항	범위	관련부서	결과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2018년~2020년	○○○○과	주의
이의재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징수 부적정	2016년~2021.7월	○○○과	시정 (추징 00,000천원)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2016년~2021.7월	-	지적사항 없음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부적정	2018년~2021.7월	-	지적사항 없음
개발부담금 부과 부적정	2014.7.15.~2021.7월	-	지적사항 없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조치 : 주의 1, 시정 1(추징 00,000천원)

▶ 2021.9.29.일자 가산세 포함 누락세원 전액 추징 완료

○ 신분상 조치 : 주의 0명

■ 모범사례 발굴 : 1건 (재활용품 임시 적환장 확보 및 테이크아웃컵 회수체계 구축)

■ 항목별 점검내용

제 목	1.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처분요구: 행정상 주의1, 신분상 주의0명)
지적사항	<p>❖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대상 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을 실시하고, 1억원 미만으로 분할구매 하지 않도록 규정 - 위 업무처리기준 제10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가격을 할인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 <p>▶ ○○○○과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인 ○○○○○ 구입과 관련하여, ○○○○ 20L, 10L의 제작에 있어 매년 시기를 달리하여 1억원 미만으로 분할 계약 하였으며, 그 외 30L, 50L, 75L, 100L ○○○○○ 또한 <u>시기별 분할하여 구매하는 등 2단계경쟁을 미실시한 사실이 있음.</u></p> <p>▶ 앞으로 1억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2단계 경쟁을 실시하여 다수공급자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해당 부서 주의 조치.</p>

제 목	2. 이의재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징수 부적정 (처분요구: 시정1)
지적사항	<p>❖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20조 제1항, 지방세 기본법 제49조 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 - 취득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60일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이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기존에 신고한 과세표준 등이 증가한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하여 취득세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p>▶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위해 ○○동 ○○○-○ 외 31필지를 수용하면서 이의재결과 행정소송에 따라 기존 취득가격보다 -----원이 증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기존 취득가격보다 -----원이 증가한 보상금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기존 취득가격보다 -----원이 증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증액분에 대한 취득세 수정신고를 누락하였음.</p> <p>▶ 이에 부산 북구 ○○○과는 취득가격이 증가한 사실을 모른 채 기존 수용재결에 따른 취득가격에 대한 취득세만을 징수하여 총 00,000천원의 누락세액(* 자료작성일 기준 가산세 포함)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p> <p>▶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으로 인해 취득가격이 증가되었으므로, ○○○과에서는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취득세 징수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요구⇒(○○○과)에서는 대행감사 기간 중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 보상 취득 증액분 신고 독려를 통해 2021. 9. 29.일자 가산세 포함 누락세원 전액(00,000천원)을 추징하여 지적사항 즉시 시정완료함.</p>

제 목	3.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지적사항 없음)
점검사항	<p>❖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되,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추징하도록 규정 <p>▶ 지식산업센터 지방세 감면 내역 해당사항 없음.</p>

제 목	4.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 (지적사항 없음)
점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소송법」 제9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소송 등 당사자로 진행한 사건 중 승소로 확정된 사건 등의 소송비용을 소송상대방에게 청구하여 회수 ▶ 2018년 이후 소송관리 대장 확인 결과 변호사를 수입한 민사소송 ○○건에 대하여 승소사건 ○건은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 ○건은 회수완료, ○건은 회수중에 있음. 화해○건은 소송비용 각자부담, 승소○건은 판결문에 의거 각자부담하여 소송비용회수 업무를 철저히 하는 등 위법부당사항 없음.

제 목	5. 개발부담금 부과 부적정 (지적사항 없음)
점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이익환수법」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사업 등 위 법 제5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의 2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 - 개발이익환수법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위 개발사업이 2014.7.15. 이전에 인가 받은 경우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 ▶ 2014. 7. 15 이후 개발부담금 부과 내역 00건 확인 결과 사업유형 제7호의 개발사업으로 위 규정 해당사항 없음.

제 목	6. 모범사례 발굴 (업무개선) 재활용품 수거 불안정 대비 임시 적환장 확보 및 테이크아웃컵 회수체계 구축
점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범자 : 작성부서 자원순환과, 직급 행정7급, 성명 ○○○ - 위 사람은 2020.1.13.부터 현재까지 부산 북구 자원순환과에 근무하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1회용품 관련 업무 등을 주관 -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재활용품 발생량은 급증하였으나 재활용품 가격하락으로 수익성은 감소함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 불안정 사태가 빈발한 상황임. - 우리 구는 주거밀집지역으로 관내 폐기물 적환 공간이 전무하여 재활용품 수거 불안정 상황에 대비한 임시 적환장 확보가 절실하며, 동시에 재활용품 수거 안정화와 품질개선을 위한 재활용 시책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음. - 이에 위 담당자는 2020년 10월~12월 임시적환장 대상지를 물색하여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에 장소 사용을 위한 협조공문 발송 및 1차·2차 방문 협의를 거쳐 2021.2.8. 총 3개소의 임시 적환장을 확보하게 되었음. [○○동 ○○○번지 일원 단기 임시 적환장 1개소와 ○○동 ○○-○○ ○○ 적환장, ○○동 ○○○ ○○ 적환장 등 장기 임시 적환장 2개소]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한 테이크아웃 플라스틱컵의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플라스틱으로 배출시 현실상 재활용 되지 않는 테이크아웃컵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와 협업하여 별도 회수체계를 구축함.- 2021. 6. 7.부터 지역카페와 함께하는 ‘테이크아웃컵 받아주기 사업’ 및 ‘테이크아웃용 1회용컵 회수보상제’를 실시하여 테이크아웃 1회용컵 수거체계 구축과 재활용품 품질개선 사업 자원관리도우미 운영으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은 물론 재활용률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고 있음. |
|--|--|